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13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2년 11월 10일
- 나. 발 의 자: 차인영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유광순)

- 가. 제안이유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항 및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(안 제5조)
    - 피해자 가족면담 및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·브리핑 조항 신설
  -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책임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-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-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2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행정안전부의 「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 및 통합 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서는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을 개정(관련 문서 시행일 '22. 02. 10.)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가족면담, 주요 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8조에서는 조문 제목 및 현장응급의료소의 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계 법령인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3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조정·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.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(시행 '20. 06. 04.)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수습·복구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통합 지원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 가족 면담,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, 기타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케 할 것으로 보여 본

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차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11월

발의자: 차인영, 이성수, 우경란

이규선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,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,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하는 상황총괄반장 지정사항과 현장응급의료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(피해자 가족면담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)(안 제5조)
- 나.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책임관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- 라.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)

#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2. 11. 14. ~ 11. 18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

7.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현장책임관 지정)”을 “(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처하기 위하여”를 “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

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도시안전과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·운영한다.
- 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.
-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응급의료활동지원)”을 “(현장응급의료소 지원)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(이하 “의료소”라 한다) 설치를 위하여 인력,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(이하 “보건소장”이라 한다)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영등포구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현장응급의료소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, “장비 부족에 따른”을 “장비”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,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제23조(자원봉사활동 지원)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2.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·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

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 ① (생략)</p> <p>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</u></p> <p>7. <u>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
<p>제7조(<u>현장책임관 지정</u>)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<u>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</u>) ① ----- ----- <u>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·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-----.</u></p>

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: 재난관련 업무 담당 국·소장(국·소장이 없는 경우, 관련부서의 장)
2.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: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·수행하는 국·소장(국·소장이 없는 경우, 소관부서의 장)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

1.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도시안전과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8조(응급의료활동지원) ① 「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편성·운영한다.

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.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현장응급의료소 지원) ① 영등포구대책본부장은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(이하 “의료소”라 한다) 설치를 위하여 인력,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.



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
2.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·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
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

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 · 제24조 (생략)

제24조 · 제25조 (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)